

육계자조활동자금 관련 현행법규의 검토와 개정방향



박 종 수 교수
충남대학교 농과대학

우리 경제의 국제화·개방화추세에 따라 수입축산물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날로 높아져가는 가운데 최근에는 설상가상으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적·물적교류가 급속히 증대되면서 그 유입의 근원도 찾지 못하는 가축의 악성 전염병이 전 축종에 걸쳐 발생되고 있다. 그로 인해 국내 축산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중국, 미국 등에서까지 확산되고 있는 가금인플루엔자가 인체에도 감염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도됨으로써 닭과 오리를 비롯한 가금류 시장은 돌이키기 힘든 치명타를 당하고 말았다. 전문가들은 설령 가금인플루엔자에 오염된 가금육이라 할지라도 가열하여 요리된 가금육은 인체에 절대로 해가 없다고 주장을 해도 소비자들은 의심의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이는

닭고기의 유통이 투명하지 못했음은 물론 닭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한 원인도 없지 않다.

이렇듯 육계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계농가가 양질의 안전한 육계를 생산·공급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닭고기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는 등 다양한 소비촉진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이 전제되지 않는 안정적인 생산은 사상누각(砂上樓閣)에 불가할 뿐이다. 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을 유지·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1. 자조금제도의 필요성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하나의 방법이 해당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자조금제도”이다.

특히 닭고기를 비롯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대부분의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비롯한 많은 고정투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생산에 장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물의 생산·공급은 매우 경직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 축산업자는 축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어 시장수요에 초과하여 축산물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생산을 단기적으로 감축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축산업자는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 자신의 실질소득을 꾸준히 유지·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증산된 축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추가시장을 꾸준히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확대를 위해 축산업자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유통관리수단이 바로 자기가 생산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활동에 참여하는 일이다.

이러한 축산자조금제도의 필요성 때문에 지난 수년 동안에 걸쳐서 축산지도자들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 국회를 설득해 왔고, 드디어 2002년 5월 14일 “축산물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이라 함)”이 제정·공포되도록 하였다. 동년 11월 14일에는 동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축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의무자조금제도를 실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2. 현행 축산자조금법에 대한 문제점과 개정방향

이러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양돈부문에서는 우여곡절과 많은 진통을 겪으면서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을 위한 절차가 1년여에 걸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육계를 비롯한 여타 축종과 그 해당 축산단체에서는 제도의 도입을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자못 축산업의 현실을 도외시한 체 제정된 축산자조금법의 내용에도 일말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축산자조금법의 경우 축산자조활동자금(이하 “축산자조금”이라 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산업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든지,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운용할 수 있는 주체인 축산단체에 대한 불분명한 설정 등 다양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 육계나 한우, 낙농분야에서 아직도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존 축산단체간의 비협조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 이의 한 예이다.

이에 육계를 비롯한 축산물의 자조금사업과 관련되어 현행 축산자조금법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다음과 같이 개략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산업자에 대한 규정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축산업자를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의무자조금을 실시하기 위해 찬반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대위원

을 선출하는 일에서부터 자조금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전반적인 의사 결정과정에 영세규모, 부업규모의 축산업자(농가)도 모두 참여시켜야 하는 불합리성을 안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1,000수 미만을 사육하는 양계농가수는 전체 양계농가수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들 98%의 농가가 사육하고 있는 닭의 숫자는 1,400천여 수로서 전체 닭 사육수수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이 경우 모든 양계농가를 의무자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절차에 포함시킬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낭비될 우려가 있으며, 축산경영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명분에도 크게 역행된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사업의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대의원 선출 등을 포함한 의무자조금사업의 추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절차에 일정 규모이상의 가축(닭)을 사육하는 축산업자(농가)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법규를 탄력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축산자조금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축산단체에 대한 규정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의무자조금의 설치를 비롯한 자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 등과 관련된 축산자조금 사업의 제반업무를 축산단체가 주관하도록 규정하고, 하나의 축산물에 둘 이상의 축산단체가 자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자조금설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전 축종에 둘 이상의 축산단체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까지의 관행으로 볼 때 각 단체간의 원활한 업무협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축종별 특정의 한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사업을 주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 단체가 추진하는 자체사업과 자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을 포함한 자조금사업은 각각 완전히 독립성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의무자조금을 실시할 때는 자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자조금을 조성·운용·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되, 그 구성원은 해당 축종별 생산자 대표와 전문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해당 축산업자들의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각 축종별 생산자단체는 자조금사업의 추진 및 운용·관리기구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축산자조금사업은 해당 축산업자들 스스로에 의해 추진하는, 스스로를 위한, 스스로의 사업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축산물 자조금사업이 가장 발전되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는 각 축종별로 다양한 종류의 생산자 단체가 있으며, 각 생산자단체들은 각기 기능과 목적이 서로 전문화 되어있다. 축종별 단체에 따라서는 임의 자조금제도를 오래 전부터 각기 자발적으로 도입하여 실시해온 생산자단체도 있었다.

그러나 지속적인 무임편승자 문제가 야기되면서 각 생산자단체별로 서로 협조하여 의무자조금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법률을 발의하였고,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제도를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담조직을 발족시켜 자조금사업을 주도도록 하였다. 현재 미국의 돈육자조금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국돈육위원회(National Pork Board), 계란자조금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전국계란위원회(National Egg Board), 쇠고기자조금사업을 전담

하고 있는 쇠고기 소비촉진 및 연구위원회(The Beef Promotion and Research Board), 우유자조금을 전담하고 있는 낙농관리협회(Dairy Management Inc.) 등이 각 축종별 자조금법에 의해 새롭게 탄생된 조직들이다.

셋째, 자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문제이다.

축산자조금법은 자조금 납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대위원의 선출을 매 4년마다 실시하며, 4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축산업자는 자조금사업이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자조금사업의 성과가 현저히 미진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축산업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사육하는 가축 또는 축산물의 4분의 1 이상을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연서를 얻어 축산단체에 대위원 선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조금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는 자조금사업 추진의 지속성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또한 자조금사업의 평가결과는 이 같은 자조금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차기 연도의 운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조성·운용된 자조금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가 자조금사업의 이해 당사자들에게 철저히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자조금사업의 평가에 대한 사항이 축산자조금법에 추가로 규정되어

야 한다.

이상에서 현행의 축산자조금법에서 일부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느 경우라도 축산자조금법은 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축산단체의 건전한 자조활동을 통해서 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그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법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축산업자와 축산단체들이다. 따라서 법은 그들이 쉽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 C

